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2016. 6. 16.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스마트리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 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에 둔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헬스케어, 문화, 여가, 식품, 의류, 엔터테인먼트 등의 미래지향적 생활 중심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친화적 연구개발을 통한 미래직업군을 창출하고 다학제적 산업연계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모델을 제안, 선도하고 이에 부합하는 신산업융합 여성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중심 신산업 분야 관련 개인 및 공동연구의 지원 및 활성화 사업
2.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사업
3. 생활중심 신산업 분야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4. 생활중심 신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사업
5. 생활중심 신산업 분야의 사업홍보 및 출판
6. 생활중심 신산업 분야의 사업 개발 및 운영

제4조(소장·부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조직) ① 연구소에 연구개발센터, 취·창업지원센터 및 연구지원센터를 둔다.

② 연구개발센터는 연구소가 추진하는 모든 연구 사업을 기획·주관하며, 학제간 연구 기반 구축, 연구비 수주, 학술회의 개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취·창업지원센터는 학부 및 대학원생의 취·창업을 위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및 산학연 네트워크 조성 및 확대 업무를 담당한다.

④ 연구지원센터는 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예산 편성과 집행을 담당하고,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제6조(센터장) ①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둘 수 있다.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임명한다.

② 각 센터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연구위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임명한다.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위촉한다.

스마트리빙연구소 규정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 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 등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9조(행정인력) 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명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를 통합적으로 관리, 평가하는 등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리빙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신산융합대학 소속 전 학과의 학과장, 연구분과장,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③ 임명된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들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산학협력위원회) ① 연구소는 학연계의 공동 연구 환경 조성, 산학협력 MOU 확대, 산학협력체계 강화 계획 수립 및 취·창업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관리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산학협력위원회는 부소장, 산학협력 중점교원, 사업단 관련 산업체 CEO, 인사담당자, 연구실무 담당자들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소장으로 한다.

③ 임명된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들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사업 계획 및 보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산융합대학장,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다음 사업 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제13조(경비 및 현금출납) ① 연구소의 경비는 자체 사업비용 및 연구기금으로 충당한다.

- ② 연구소의 현금 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부칙 <2016. 6. 16. 제정>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